

인천지방법원 2021. 2. 16 선고 2020가단22468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A

피고B 주식회사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1. 2. 1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5,102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12. 2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이영림

별지